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정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899

발의연월일: 2025. 2. 4.

발 의 자:이정문・박 정・이인영

이학영 · 문진석 · 황명선

이연희 · 어기구 · 임광현

김우영 • 이상식 • 김현정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 5인의 합의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구임에도 윤석열의 국회 추천 방송통신위원 임명 거부 등으로 인해 대통령 추천 2인으로 구성된 채 운영되어왔음.

그러나 2024년 10월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"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제재 조치는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"고 판결한 바 있으며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 1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.

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허가 및 승인 유효 기간 내에 재허가 혹은 재승인 심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여법적 미비점을 해소하고 방송사의 방송권 보장 및 국민의 시청권을

보호하고자 함(안 제17조제5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해 허가 및 승인 유효 기간 내에 재허가 혹은 재승인 심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17條(再許可 등) ① ~ ④ (생	第17條(再許可 등) ① ~ ④ (현
략)	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
	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
	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부 사정
	등으로 인해 허가 및 승인 유효
	기간 내에 재허가 혹은 재승인
	심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의
	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효기간이
	연장된 것으로 본다.